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목포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

임채현**
* 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hip's Cadet Officer

- As focusing on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Chae-Hyun Lim**
*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핵심용어 : 해기사, 실습생, 법적 지위, 선박직원법, 선원법
Key Words : Ship's Officer, Cadet, Legal Status, Ship Personnel Act, Seafarers Act

1. 서론

▶ 실습생의 안전문제 발생 및 이에 대응방안 필요

✓ 최근 상선에서 실습 중 실습생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실습생의 안전보호 및 실습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규정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현행 법제도에 따른 실습생의 법적지위의 파악 필요

✓ 현행 규정상 (목포해양대학교) 대학 재학 중 해기사 면허의 취득을 위해 실습이 필요하고, 크게 실습선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 상선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위탁실습생”)으로 구분 가능

✓ 특히, 외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실습의 경우 그 실습생들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향후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관리 및 실습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자 함

주요 관련 법규	기초
고등교육법	•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포함
대학성 현장실습 운영규정	• 동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사외한 학생의 학업실적의 적용되는 기본법
선박직원법	• 대학성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현장실습의 적용되는 특별법
선원법	• 제21조의 해기사 실습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포함
해위험안전법 제4차교양에 관한 규정	• 선원법은 실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원이 되고자 실습을 취해 승선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사외한 학생의 학업실적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음
국립법규	• 제13조의 실습선원의 제4차교양에 관한 규정 포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동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차당당하고 학사외한 학생들의 학업실적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음 • 학사외한 학생의 학업실적은 특별히 적용되고 있음
직업교육훈련제약의 제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조서는 「조기출퇴근법」, 제104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 제3항의 사전허가제안 중 「직업교육훈련제약」에 관해 제104조의17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단종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이 허락한 사항 준수사항을 규정함
기타	• 동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교육훈련의 직업종에 대한 규정과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2조 상항목과 준수 가능성이 있음
국제법규	• 선원법 상선, 선원, 개척승무원 및 정기승무원의 기준에 국제 조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해기사 면허의 취득을 위한 학업실적은 학업에 관한 법
해사노동협약(2006 MLC)	• 제2조 선원의 정의(보조원 포함) 승무원, 개척 승무원 및 정기 승무원에 관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선원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제10조 선원의 임명(보조원 포함) 승무원의 임명(보조원 포함)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

2. 해기사 실습생에 관한 규정의 이해

B. 해사대학 학생의 위탁실습 관련 규정 개요

- 고등교육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이 특별법규로 일부 적용됨
- 또한, 목포해양대학교 내부 규정한 학칙 및 교육규정, 승선실습학사운영규정, 승선실습배정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되며, 위탁승선실습을 하는 학생은 위탁승선실습지침서를 참조함
- 국제협약의 경우에도 선원의 자격 및 선원의 근로에 관한 국제적 최소 요건이고, 또한 국제기구의 준수요청 및 감독이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 협약의 준수가 요청됨

3. 결론

▶ 대학성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법적 지위

대학성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에 따른 대학에 해당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윤의 창출,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업체의 교육과정으로 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대학 위탁실습생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신분을 가짐

▶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에 따른 법적 지위

특별은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선원법상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해 승선하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선박직원법이 상기 규정 이외에는 실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원법상 실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선원법상 제3조 제2항으로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선원법 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반면 선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선원이 아닌승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선원법상 선원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함
해사대학 위탁실습생의 경우에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기보다는, 실제실습의 행하는 별도로,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승선 중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

** First & Corresponding Author : chlim@mmu.ac.kr, 010-6622-3087